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 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 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36/0917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키움 KOSEF NIFTY 50 인디아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(합성)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(주식-파생형)
- 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6.01.01 - 2016.12.31
- 라. 집합투자업자: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NH투자증권, 키움증권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 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6. 07.05	투자신탁 명칭변경	키움 KOSEF CNX NIFTY 인디아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(합성)	키움 KOSEF NIFTY 50 인디아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(합성)
	신탁계약의 목적 제1조	② 이 투자신탁은 “CNX Nifty Index” (이하 “기초자산”이라 한다)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(~)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.	② 이 투자신탁은 “Nifty 50 Index” (이하 “기초자산”이라 한다)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(~)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.
	한도및제한의예외 제20조	④ <신설>	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(~)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
	금전차입등의제한 제48조	② 제1항에 (~)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② 제1항에 (~)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 자세한 변경사항은 <http://dart.fss.or.kr> 을 통해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.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 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• 해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 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해당사항 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탁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- 해당사항 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•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 - 해당사항 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